

의안번호	2203981
의 퇴 인	이원택의원
회 답 일	2024.10.8.
추 계 번호	24D3006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4호 신설)	-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51호 신설	-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로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4호 신설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제51호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추가(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)

- 개정안은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¹⁾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안전감독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

1)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39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‘어선안전감독관’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임(참고: 법률명이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서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2024.1.2.)되어 시행예정(2025.1.3.))

수 있는 공무원으로 추가하고,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로 함

- 개정안에 따라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추가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실시, 수사·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에게 수사활동비가 지급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어선안전감독관 규모,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법경찰관리에 게 지급될 수사활동비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활동비를²⁾ 매월 25만원 지급하고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.go.kr

2) 「근로감독관규정」 제6조(활동비 지급)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.